KOSHA GUIDE

C - 59 - 2022

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.

- (바) 지붕경사가 20° 이상일 때 지붕작업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① 작업발판 길이는 3 m 이상이어야 한다.
 - ② 작업발판 폭은 400 mm 이상이어야 한다.
 - ③ 미끄러지는 것과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 - ④ 작업자 및 자재 등을 포함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 - (5) 디딤발판 간격은 500 mm 이내이어야 한다.
 - ⑥ 목재 두께는 35 mm 이상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.
- (사) 지붕경사가 20° 이내일 때 지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① 지붕사다리 끝부분의 고정걸이나 고정철물을 떨어지기 쉬운 용마루 덮개에 걸어서는 안된다. 다만 로프를 이용해 반대 경사면에 묶거나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.
 - ② 처마의 홈통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 디딤대나 지붕사다리 지지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(아) 지붕 작업 시 항상 주의가 필요한 곳(개구부 등)에는 폭 500 mm 이상의 지붕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자) 지붕 작업 시 작업자가 밟았을 때 파손되기 쉬운 재질 주변에서 작업이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[부록]의 성능·제작기준을 만족하는 지붕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6.4 강판지붕

(1) 샌드위치 판넬 등의 강판지붕은 산업용 건물(창고, 공장, 대규모 소매점 등)에 주로 사용되며 강판지붕의 지붕경사도가 가파른 경우에는 6.2항의 경사진 지붕의 지침을 적용한다.